

수출e-구매론 이용약관서

(판매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귀중

본인(이하 “판매기업”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_____(이하 “구매기업”이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수출e-구매론」 약정에 기초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수출물품의 공급대금 수금을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의 「수출신용보증(공급망) 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 및 등 「시행세칙」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구매기업에게 수출물품(원·부자재, 완제품 및 용역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합니다)을 공급하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의 공급대금 수금을 지원하는 은행의 「수출e-구매론 결제제도(이하 “결제제도”라 합니다)」 이용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정체결의 기본사항)

판매기업은 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합니다.

1. 대출 실행일 이후에 물품 등의 수량, 품질, 가격, 사후관리 등 상거래 관계로 말미암은 분쟁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사이에 해결합니다.
2.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이후에는 은행이 해당 물품 등의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판매기업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은 공사에 이전됩니다.
3. 은행이 판매기업의 선입금에 의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구매기업에게 대출을 실행한 경우, 구매기업은 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고 물품 등의 공급대금 지급채무를 가지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2. “판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
3. “수출물품”이라 함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의 공급 중 수출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구매확인서로 그 공급이 확인된 것을 말합니다.
4.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합니다)가 전자적으로 발급한 증서로서 물품 등의 공급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말하며, 물품 등의 공급 이후 발급여부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결제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구매확인서는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이하 “KTNET”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구매확인서 정보를 말합니다.
5. “구매확인서 정보”라 함은 구매확인서에 기재된 정보 중 ‘구매확인서 번호’, ‘구매자의 상호·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 ‘공급자의 상호·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HS부호’, ‘구매원료·기재의 용도명세’, ‘구매일 또는 공급일’, ‘구매확인서 발급일자 또는 확인일자’, ‘관련 세금계산서 번호’ 등을 말합니다.
6. “세금계산서”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7. “세금계산서 정보”라 함은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정보 중 ‘승인번호’,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및 ‘품목’을 말합니다.
8. “매출채권”(이하 “채권”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서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말합니다.
9. “매출채권 발행 신청”이라 함은 구매기업명, 구매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판매기업명, 판매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채권금액, 결제일, 구매확인서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결제일**”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채권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대출금의 상환일 또는 채권의 변제일을 말하며, **구매확인서 상의 구매일 또는 공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확인서 상의 구매일 또는 공급일이 복수 이상의 일자인 경우에는 가장 빠른 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의 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1. “**선입금**”이라 함은 채권의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 신청하는 행위로서, **구매기업의 개별대출을 실행하여 판매기업에게 지급(판매기업의 약정계좌 입금을 포함합니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외화통화로 발행된 채권은 결제일 전까지 선입금 할 수 없으며, 채권의 결제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지급합니다.**
12. “**전자적 장치**”라 함은 기업인터넷뱅킹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결제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컴퓨터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

제4조(결제제도 이용약관의 체결, 정보집중 및 정보제공의 동의)

1. 판매기업은 결제제도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은행은 결제제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판매기업에 관한 기본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채권 내역, 선입금 내역 등 결제제도와 관련한 정보를 공사 및 KNET에 집중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로 합니다.
3. 판매기업은 이 약정의 체결에 의하여 제2항에 포함된 결제제도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4.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된 물품 등의 공급대금 지급을 위한 대금결제 용도임을 채권 발행 신청 정보와 대조하고, 구매확인서 금액 범위 내의 채권 발행 여부 등 구매확인서 한도관리 및 결제제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래 정보를 KNET이 은행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결제제도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①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 : 제3조(용어의 정의) 5. “구매확인서 정보”에서 언급한 구매확인서에 기재된 항목
 - ② 보유기간 : 은행은 제①호의 정보를 판매기업에게 결제제도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거래내용의 확인)

1. 은행은 결제제도와 관련한 거래의 처리결과를 판매기업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기업이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전자적 장치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 형태로 판매기업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3. 판매기업은 요청한 거래내용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6조(업무의 제한)

다음 각 항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제도 관련 업무가 제한됩니다.

1. 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구매기업이 은행과 체결한 원 약정서 “제 6조(감액·정지)” 조항에 의하여 은행이 구매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3. 공사의 「수출신용보증(공급망) 약관」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행한 경우
4. 공사가 은행에게 구매기업을 신용보증 제한 대상으로 통지한 경우
5. 판매기업 등 제3자가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등 공사의 「수출신용보증(공급망) 약관」에서 정한 대출의 실행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구매기업이 은행에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거나 불건전여신이 있는 경우 및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
7. 구매기업이 결제제도와 관련한 여신 또는 은행과 약정한 타 여신을 연체한 경우
8. 구매기업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구매기업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하거나 등록된 경우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경우
11. 구매기업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한 경우
12. 공사가 은행에게 구매기업을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경우



- 13. 허위매출, 현금용통성거래 등 물품 등의 공급대금의 지급이 아닌 채권을 발행하는 등 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 14.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등 「시행세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7조(입금계좌의 지정)

공급대금의 입금을 위한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다음의 계좌로 약정합니다.

※ (※)하나은행에 개설한 판매기업 명의의 입금계좌와 관련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명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원화)
		(외화)

제8조(채권의 발행 및 취소)

채권의 발행 및 취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기업은 물품 등의 공급대금의 결제일이 구매확인서 상의 구매일 또는 공급일로부터 90일 이내로써 구매확인서로 그 공급이 확인된 물품 등의 공급대금의 결제 용도로만 채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구매확인서 상의 구매일 또는 공급일이 복수 이상의 일자 인 경우에는 가장 빠른 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의 기간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2. 구매기업은 구매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구매확인서를 기준으로 다수의 채권을 발행하는(이 미 발행한 채권을 포함합니다)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3. 구매기업은 채권 발행 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는 구매확인서 상의 전자세 금계산서 정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구매확인서 상의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 며,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 범위 내에서 다수의 채권을 발행하는(이미 발행한 채권을 포함합니다)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금 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4. 채권의 결제일이 은행영업일(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제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로 자동 이 연하여 처리합니다.
5.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액은 최소 일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6. 구매기업은 채권의 결제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판매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의 하자, 전산조작 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채 권발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기업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선입금 한 경우, 구매기업은 채권발 행을 취소할 수 없으며, 결제일에 채권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7. 허위매출, 현금용통성거래 등과 같이 물품 등의 공급대금의 지급이 아닌 채권의 발행인 경우, 은행은 해당 채권발행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제9조(관련법 상 지연이자에 대한 유의사항)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기업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합니다.)과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할인료 또는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구매기업이 「상생협력법」 상 납품대금을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구매기업이 물품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채권의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2. 구매기업이 「하도급법」 상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구매기업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채권의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제10조(지급보류 등록)

1. 이 약정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이하 “압류”라 합니다) 등이 구매기업에게 송달되는 경우, 구매기업의 신청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 ① 판매기업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선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취소한 후 구매기업이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
 - ② 판매기업이 채권 전액에 대하여 선입금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하여 압류대상 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③ 판매기업이 채권의 일부 금액에 대하여 선입금하여 채권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가. 선입금하지 않은 채권의 잔여금액에 대하여 지급보류를 등록하기로 합니다.

나. 지급보류 등록된 채권에 대하여는 결제일 도래하여 구매기업의 결제 시, 은행의 미지급금 계정에 예치하기로 합니다.

다.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된 금액의 처리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2. 구매기업에게 (가)압류 등이 송달된 경우 구매기업은 지체 없이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구매기업이 통지를 지체하여 판매기업에게 채권대금이 지급되는 등 이 약정에 의한 거래가 실행된 경우, 구매기업이 변제 책임을 집니다.

제11조(공급대금의 입금)

1. 구매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판매기업이 선입금하는 경우, 구매기업의 개별대출을 실행하여 판매기업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판매기업이 선입금할 수 있는 채권은 원화통화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
2.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채권이 물품 등의 공급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선입금 시, 전자적인 방법 또는 서면으로 「부가가치세법」 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를 제출(또는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는 구매확인서 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정보는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에 따라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진위확인 등 B2B상거래정보를 조회합니다.
3. 구매기업과 공사 간의 보증 계약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 간의 수출e-구매론 약정에 따라 판매기업 선입금 최고 잔액(구매기업 명의로 실행되어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을 말합니다)을 정한 경우, 구매기업이 약정한 여신(한도)금액의 여유에도 불구하고 선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선입금은 채권 발행 당일부터 채권의 결제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5. 선입금은 구매기업의 여신(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채권 건 별로 횟수에 상관없이 최저 일만원 이상 분할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 판매기업이 선입금 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신청함이 원칙이나 기업인터넷뱅킹 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기로 하며, 이때 제출하는 “납품대금 선입금 신청서” 상의 인감이 본인의 입금계좌 인감일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청한 것으로 합니다.
7. 판매기업의 선입금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선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급대금의 입금은, 구매기업이 결제계좌에 입금한 결제대금으로 채권의 결제일에 판매기업에게 지급합니다.
8. 지급보류가 등록된 채권에 대하여는 결제일 도래하여 구매기업의 결제 시, 은행의 미지급금 계정에 예치하며, 금액의 처리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2조(대출의 이자 및 보증료의 납부)

선입금 시 발생하는 대출이자 및 보증료는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이자율 및 공사와 구매기업이 약정한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 판매기업의 선입금에 따른 대출이자 는 판매기업이 부담하며, 대금 입금 시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2. 보증료는 판매기업이 부담하며, 대금 입금 시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제13조(손실부담 및 면책)

1. 은행은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 간에 물품 등의 배송, 운송, 하자, 반품 등 매매계약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이 약정의 이용거래와 관련한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손실부담 및 면책”을 준용합니다.

제14조(약관의 변경)

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약관의 변경”을 준용합니다.

제15조(약정의 효력 및 약관 적용의 우선순위)

1. 이 약정의 효력은 약정체결일로부터 구매기업이 은행과 약정한 약정서의 여신기간 만료일(또는 약정기한)까지 유효합니다.
2. 제1항에 의해 약정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약정에 의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 약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은행과 판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공사의 「수출신용보증(공급망)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6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정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0 년 월 일

[판매기업]

기업명 : _____(인)

주 소 : _____



수출e-구매론 판매기업 거래신청서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1. 중심기업(구매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중심기업코드	
-----	--	---------	--	--------	--

2. 판매기업 정보

법인명 (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명)	대표이사(대표자) 생년월일		
업태	종목		
주요취급품목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업규모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기업 <input type="checkbox"/> 소기업 <input type="checkbox"/> 공공 및 기타		

※ 해당되는 기업규모의 “□”에 “v” 표시 합니다.

3.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휴대전화번호	
담당자팩스번호		담당자e-mail주소	

4. 첨부서류

- (1)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2)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 자서시 생략가능),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3) 대리인에 의한 약정시 추가서류
 - ① 법인사업자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수임인 실명확인증표
 - ② 개인사업자 : 위임장(개인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실명확인증표
- (4) 공동대표인 경우
 - ①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전원이 연서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
 -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타 대표자로부터 판매기업 약정 및 공급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 받아 대표사업자 1인과 약정 체결합니다.
- (5) 위의 기본서류 외에 판매기업 이용약관 시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판매기업]

기업명 : _____(인)

